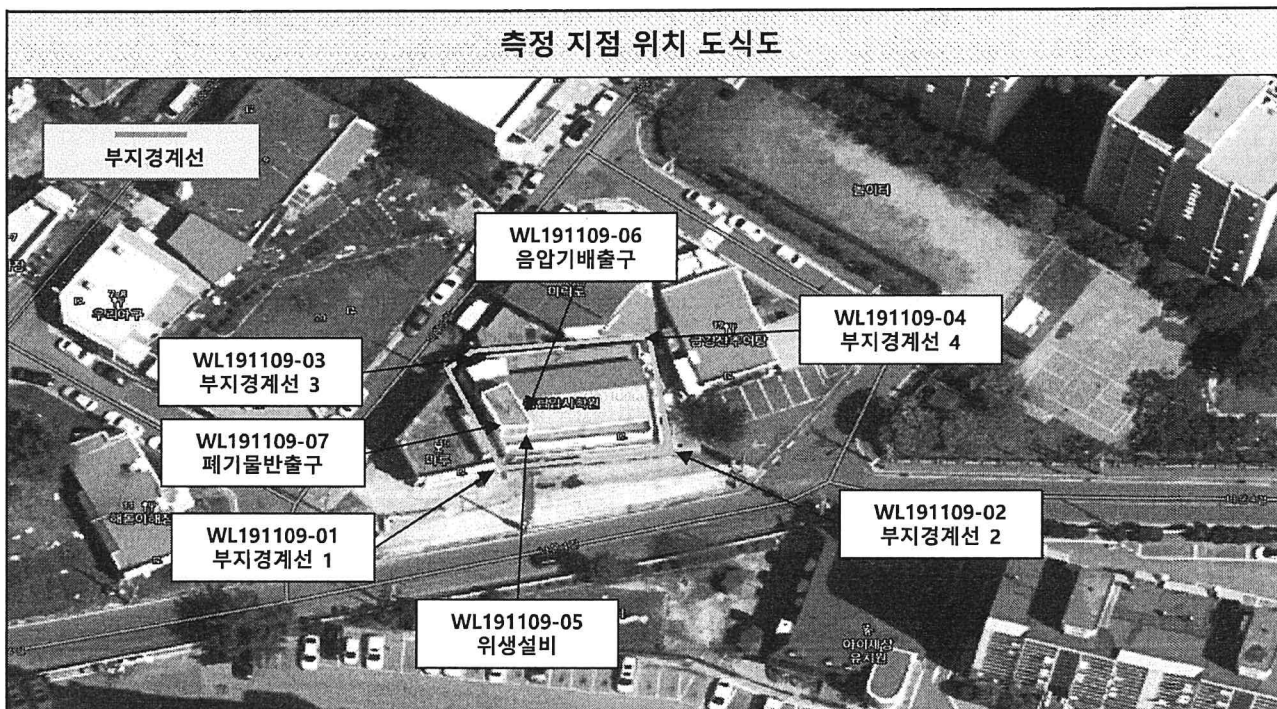


별첨 1

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측정 일시		2019. 11. 09					
측 정 결 과							
Sample no	Process	Flow(ℓ)	Time (min)	Total Vol(ℓ/min)	Total Fiber	섬유농도 Conc.(f/cc)	초과 여부
WL191109-01	부지경계선1	10.12	240	2,428.8	8	0.0016	기준치 이하
WL191109-02	부지경계선2	10.11	240	2,426.4	9	0.0018	기준치 이하
WL191109-03	부지경계선3	10.14	240	2,433.6	9	0.0018	기준치 이하
WL191109-04	부지경계선4	10.11	240	2,426.4	8	0.0016	기준치 이하
WL191109-05	위생설비	10.13	60	607.8	10	0.0027	기준치 이하
WL191109-06	음압기배출구	10.12	60	607.2	11	0.0030	기준치 이하
WL191109-07	폐기물반출구	10.13	60	607.9	10	0.0027	기준치 이하

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. 11. 0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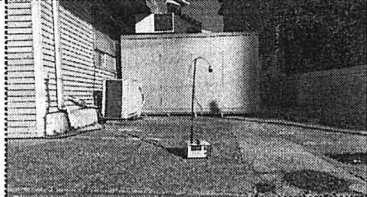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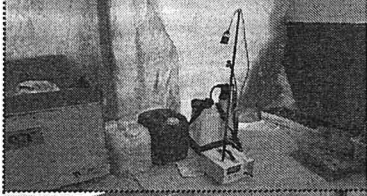
유한회사 올림환경기술원



석면해체·제거업자 : (주)에스플러스건설 귀하

2-1. 석면비산측정 사진대지

2019. 11. 09 / 날씨 : 맑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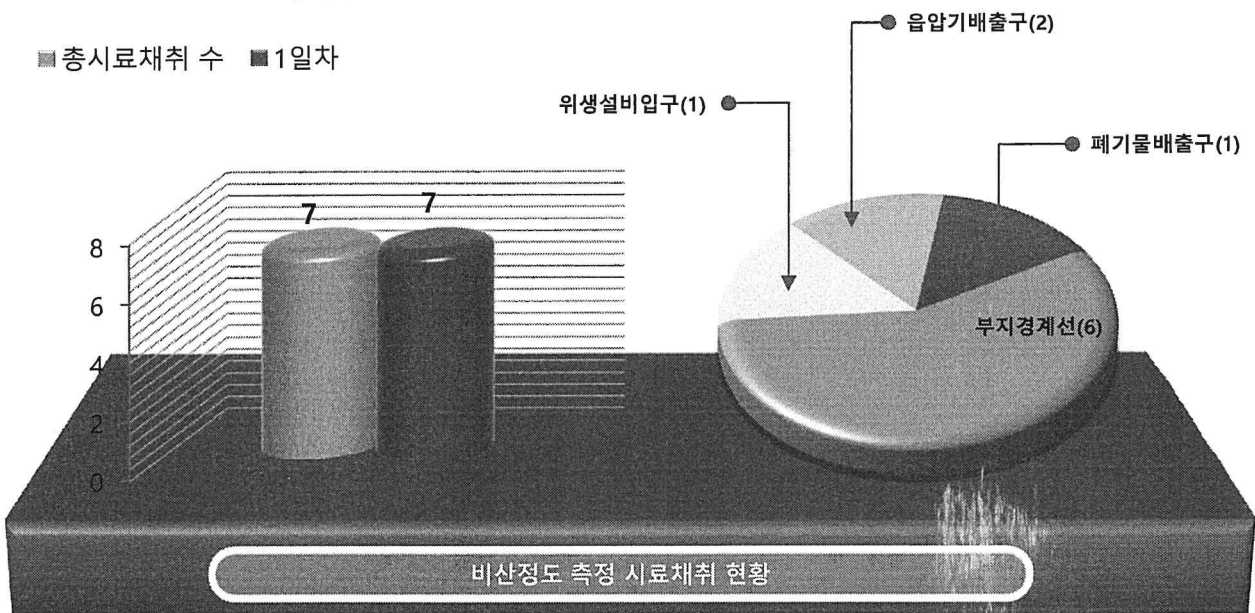
연번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 (f/cc)	초과 여부	비고(채취 사진)
1	WL191109-01	부지경계선1	0.0016	0.01개/cm ³ 미만	
2	WL191109-02	부지경계선2	0.0018	0.01개/cm ³ 미만	
3	WL191109-03	부지경계선3	0.0018	0.01개/cm ³ 미만	
4	WL191109-04	부지경계선4	0.0016	0.01개/cm ³ 미만	
5	WL191109-05	위생설비	0.0027	0.01개/cm ³ 미만	
6	WL191109-06	음압기배출구	0.0030	0.01개/cm ³ 미만	
7	WL191109-07	폐기물반출구	0.0027	0.01개/cm ³ 미만	

3. 석면 농도기준 측정결과 평가

-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석면해체·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를 0.01개/cm³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

부처	관련법규	목적	농도기준	비고
고용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	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평가	0.1개/cc	8시간 TWA
		석면해체·제거 후 작업완료 확인	0.01개/cc	
환경부	석면안전관리법	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농도 평가	0.01개/cc	

※ TWA : 시간가중평균농도 : 1일 8시간, 주 40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거의 모든 근로자가 매일 노출되더라도 건강상 유해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석면노출농도



- 관련고시에 근거하여 석면해체 작업 중 시료 포집을 통해 석면비산관리 농도를 측정하였음
- 시료채취 수는 **총 1일 기준으로 부지경계선 4개와 위생설비입구 1개, 음압기배출구 1개, 폐기물배출구 1개 총 7개의 공기 중 석면시료를 채취하였음.**
- 분석결과 각 시료의 농도가 0.01개/cc 이하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)의 공기중 석면농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

※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. 분석 시 석면농도가 0.01 개/cm³ 이하라는 것은 공기 중에 석면을 포함한 섬유의 농도가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분석 가능한 최소 수준의 농도 이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, 결과의 변이를 고려할 때 재현성있게 평가 가능한 최소한의 농도 수준으로, 사실상 석면의 건강장해로부터 안전한 공기 중 석면농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※ 본 측정. 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섬유농도 결과는 분석결과의 높은 변이를 고려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 수준의 낮은 값은 거의 의미 없으나, 분석결과가 0.01 개/cm³에 가까운 경우 수치를 반올림하면 노출기준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, 분석결과는 석면 조사 및 정도관리규정(노동부 고시 제2009-32)에 따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함

❖ 별첨 1. 석면조사기관 지정서(고용노동부)

2013. 08/12 11:37 0634500583

608587

#1633 P.001/001

제2013-120003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유한회사울림환경기술원	
소재지	(573-540)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925-21 (오식도동)	
대표자성명	여성구	
지정사항	층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3. 7. 31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

